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해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5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4.

발 의 자:조해진·추경호·김은혜

서일준 • 김정재 • 박성민

조수진 · 정운천 · 박대수

이양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, 일부 납세자들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세정과 재정운용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,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.

특히 지방세의 경우, 징수시효가 만료돼 받아낼 수 없게 된 금액이지난 10년 동안 7천8백여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, 지자체도 행정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체납처분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지방세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, 지방세 체납자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 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위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39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조해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494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(체납처분의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 분(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)을 세관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방법,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하는 체납액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9조의2(체납처분의 위탁)
	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
	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
	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
	대한 체납처분(수입하는 물품에
	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)을
	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
	탁 방법,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
	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
	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	<u>다.</u>